

포 상 규 칙

제 정 2005. 07. 13

개 정 2015. 12. 30
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전북연구원(이하 “연구원”이라 한다) 인사규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(개정 2015.12.30)

제2조(포상) ①직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포상을 행할 수 있다. 단, 제5호의 경우는 인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.

1.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
2. 대외적으로 원위를 크게 선양한 경우
3.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시하여 연구원의 이익과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
4. 원장이 포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
5. 연구원이 주관하는 교육훈련 및 각종 경기에서 개인 또는 부서가 우수한 성적을 올린 경우

②연구원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부인사 또는 단체에 대해서는 인사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포상을 행할 수 있다.

제3조(포상의 구분) ①포상은 표창과 상 및 감사장으로 구분한다.

②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에는 표창장을, 제5호의 경우에는 상장을 수요하고, 포상을 행할 때에는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.

제4조(포상후보자 추천) ①포상후보자는 원장 또는 소장의 추천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.

②포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<별지 제1호 서식>에 의한 공적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원장 또는 소장이 아닌 경우에는 추천서에 대하여

인사부서에서 추천서에 대한 사실조사 후 공적조서를 작성한다.

③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.

- 1. 직위해제중에 있는자
- 2. 징계의결요구중에 있는자
- 3.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다음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 - 가. 감봉 1년
 - 나. 견책 6월

제5조(포상대상자 선발) ①인사심의위원회에서 포상 대상자를 선별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
- 1. 공적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 여부
- 2. 공적이 질적, 양적인 면에서 뚜렷하고 객관성이 있는지 여부

②포상 후보자의 공적 정도가 유사할 경우에는 다음 원칙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둔다.

- 1. 장기근속자
- 2. 근무성적평점이 우수한 자

제6조(포상권자) 본 규칙에 의한 포상은 연구원장 명의로 한다.

제7조(이중포상의 금지) 포상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중복으로 행할 수 없다.

제8조(포상시기) ①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구분하여 행한다.

②정기포상은 연말에 행하고 수시포상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행한다.

제9조(포상자 명단) 포상 시행 주무부서는 <별지 제2호 서식>포상자 명부를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.

제10조(포상의 취소) 포상의 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그 포상은 인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.

제11조(추서) 표창을 받을 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가족에게 이를 수여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(2015.12.30)

이 규칙은 원장의 승인을 얻은 날로부터 시행한다.

<별지 제1호 서식>

공 적 조 서			
소	속 :		
직	위 :		
성	명 :	생년월일 :	
과거 포상 기록(작성일로부터 2년전까지의 포상기록)			
년 월 일	내 용	년 월 일	내 용
공적요지(50자 이내)			
추 천 훈 격			
위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 합니다.			
추천자 직위 :		20 . .	성 명 : (인)

공 적 사 항

<별지 제2호 서식>

포 상 대 장

일련번호	구 분 (표창, 감사패, 감사장)	소 속	성 명	공적사항	비 고 (연락처)